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6. 24.

북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식

1. 제출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지속가능성” 등의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공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및 교육·홍보, 경비의 지원에 관해 기술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0. 4. 22. ~ 2021. 5.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성동구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시행규칙까지 총 1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1조는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조례 제정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의 일부 내용을 인용함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성동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17개)

1. 빈곤 종식: 모든 곳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굶주림 종결: 굶주림을 없애고, 식량 안보를 성취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웰빙 장려
4. 질적인 교육: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교육 기회 장려
5.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든 사람들에게 물, 위생의 이용 가능성,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7. 깨끗한 에너지: 신뢰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보장
8. 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생산적 고용 촉진
9. 산업, 혁신, 인프라: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 혁신 육성, 재생 가능한 인프라 건설
10. 불평등 감소: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도시와 주거지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만들기
13. 기후 행동: 기후 변화와 그 효과에 대응하는 긴급한 행동 취하기
14. 수중 생물: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
15. 육지 생물: 육지 생태계를 보호,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사용을 촉진, 사막화 대응, 토양 오염 및 생물 다양성 감소 저지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정의에의 접근 보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5조는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공표하고, 지표에 따른 구의 지속가능성을 2년마다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는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4조)**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 안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안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 안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안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안 제14조(수당)

- **조사·연구의 의뢰, 교육·홍보, 경비의 지원(안 제15조 ~ 안 제17조)**
 - 안 제15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 연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
 - 안 제16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¹⁾의 ‘의제21’로 지속가능발전이 채택된 이후,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인류의 공존과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²⁾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로 하여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행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는 등 국가지속가능 발전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제도화 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안 제4조 표 참고(17개 목표)

-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8년 국내에서도 근거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 2020년 7월에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정책³⁾을 발표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축으로 분야별 투자와 지속가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촉진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이행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고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경제·환경 등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또는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각 분야별 전문적인 특성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0대 대표과제 : ① 데이터 댐 ② 인공지능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 그린 리모델링 ⑤ 그린 에너지 ⑥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⑦ 그린 스마트 스쿨 ⑧ 디지털 트윈 ⑨ SOC 디지털화 ⑩ 스마트 그린산단